


(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-참조29)

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	성남시의회
	제284회(임시회)

2023.07.17.(월)
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

조례(안) 등 검토보고서

《검토사항》

- 조례안 8건
(제정 2건, 일부개정 6건)
- 민간위탁 동의안 7건

문화복지체육위원회

(전문위원 염대석)

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· 징수조례 일부개정안

1. 제안경위

- 제출자: 성남시장
- 의안번호: 제5193호

2. 제안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의 일부 개정(2023. 03. 28. 시행)으로 개인정보 파기, 건강검진 등의 신고,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 과태료 부과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·위임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
 - 법 제34조제1항 → 법 제34조(안 제1조)
 - 법 제23 및 제29조 → 법 제34조(안 제2조)
-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(안 별표)
- 제4호서식,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 (안 별지)

4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
 -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, 제22조, 제23조, 제29조, 제34조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
- 기 타
 - 입법예고(2023. 05. 30. ~ 06. 09.): 의견 없음
 - ※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의 상위 법령인 「지역보건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인용·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<개정 된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>

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나.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

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(5년)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과태료 처분기준의 설정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른 법적 근거로
 -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“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34조에 따라” 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
- 안 제2조는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
 -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“제23조 및 제29조” 를 “제34조” 로 조례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임.
- 별표 및 별지의 개정
 -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(안 별표)
 - 과태료 징수 및 처분 관련 서식(안 제4호서식, 안 제8호서식, 안 제9호서식)

다.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참고적으로 「지역보건법」의 일부 개정(2023. 03. 28. 시행)으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근거를 마련하고,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, 보건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처분기준의 설정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3조 및 제29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[별표]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제2조 관련)</p> <p>□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□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30%;">위 반 내 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근거조항</th> <th colspan="3" style="width: 60%;">과태료 금액(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</th> <th>2차</th> <th>3차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.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·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·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</td> <td rowspan="2">지역보건법 제26조</td> <td>100</td> <td>15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50</td> <td>10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2.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</td> <td></td> <td>100</td> <td>150</td> <td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□ 감경기준 위반동기 및 결과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</p>	위 반 내 용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	1차	2차	3차이상	1.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·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·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26조	100	150	300	50	100	300	2.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	100	150	300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34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4조 ----- ----- -----.</p> <p>[별표]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제2조 관련)</p> <p>□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□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30%;">위 반 내 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근거조항</th> <th colspan="3" style="width: 60%;">과태료 금액(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</th> <th>2차</th> <th>3차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</td> <td>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</td> <td>600</td> <td>1,200</td> <td>2,400</td> </tr> <tr> <td>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</td> <td>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</td> <td>100</td> <td>15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</td> <td>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</td> <td>100</td> <td>150</td> <td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□ 감경기준 위반동기 및 결과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</p>	위 반 내 용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	1차	2차	3차이상	1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	600	1,200	2,400	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	100	150	300	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	100	150	300
위 반 내 용		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	2차		3차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·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·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26조	100	15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50	1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	100	15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반 내 용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	2차	3차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	600	1,200	2,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	100	15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	100	15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[별지 제4호서식]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

문서번호		200 _____	
수 신			
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			
<p>귀하께서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납입 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200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통지 제 호			
과 태 료 처 분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전 화 번 호
위 반 사 항	관련법 조항		위 반 내 용
	산 출 근 거		
과태료 금액			
<p>※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		
첨부 :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			
20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			
성 남 시 장 (인)			

[별지 제8호서식]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

신 청 인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내 역	부 과 기 관		납부통지서 번 호	
	고 지 받 은 일 자		과 태 료 금 액	
	과 태 료 처 분 사 유			
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(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)			
<p>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
20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				
신청인 : _____ (인)				
성 남 시 장 귀 하				

개 정 안

[별지 제4호서식]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

문서번호		20 _____	
수 신			
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			
<p>귀하께서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별지 납입 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200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통지 제 호			
과 태 료 처 분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전 화 번 호
위 반 사 항	관련법 조항		위 반 내 용
	산 출 근 거		
과태료 금액			
<p>※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		
첨부 :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			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			
성 남 시 장 (인)			

[별지 제8호서식]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

신 청 인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내 역	부 과 기 관		납부통지서 번 호	
	고 지 받 은 일 자		과 태 료 금 액	
	과 태 료 처 분 사 유			
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(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)			
<p>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				
신청인 : _____ (인)				
성 남 시 장 귀 하				

현 행

[별지 제9호서식]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제 호			
수 신		지방법원장 귀하	
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			
<p>1.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제3항 관련입니다.</p> <p>2.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및 「성남시 지역보건법」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정수 조례」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처분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이의 제기자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과태료 처분	과태료 처분명		처분근거
	처분 송달일		이의제기일
	처 분 사 유	(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)	
이의제기 사유	“		
<p>첨부 1. 이의신청서 1부</p> <p>2.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.</p> <p>3. 그 밖의 증거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남 시 장 (인)</p>			

개 정 안

[별지 제9호서식]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제 호			
수 신		지방법원장 귀하	
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			
<p>1.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관련입니다.</p> <p>2.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 「성남시 지역보건법」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정수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, 처분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이의 제기자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과태료 처분	과태료 처분명		처분근거
	처분 송달일		이의제기일
	처 분 사 유	(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)	
이의제기 사유	“		
<p>첨부 1. 이의신청서 1부</p> <p>2.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.</p> <p>3. 그 밖의 증거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남 시 장 (인)</p>			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역보건법

제5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(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·법인·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·법인·시설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, 처리 목적·방식,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⑧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제22조(정보의 파기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

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<개정 2023. 3. 28.>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제23조(건강검진 등의 신고) ① 「의료법」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(이하 “건강검진등”이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제29조(동일 명칭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34조(과태료)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3. 14.>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3조 관련)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마. 법 제21조제1항·제39조의6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4호	600	1,200	2,400